

공제금지급특별약관

제1조 (적용범위)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피공제자로 하는 선급금보증공제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% 이상을 출자한 기관(이하 “정부투자기관“이라 합니다)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0% 이상인 기관

제2조 (공제금 지급액) ①본회는 피공제자가 선금(전도금) 또는 전도자채대가를 반환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급금보증공제 보통약관의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반환 받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
②제1항의 지급공제금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.

제3조 (준용규정)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급금보증공제 보통약관을 따릅니다.